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신안산대학교 |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규정 | 규정 번호 4-1-21 제정 일자 1998. 12. 1. 개정 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교무처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신안산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) 라 한다.

<2019.11.14. 개정>

제3조(소재) 본 위원회는 신안산대학교내에 둔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 2 장 위 원 회

제4조(구성) 위원회의 구성과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은 위탁산업체 임직원 및 본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(임명)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, 외부 위원이 1/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<2023. 6. 21. 개정>

2.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3. 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. <2008.2.27., 2012.1.16 개정>

4.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<2008.2.27., 2012.1.16. 개정>

제5조(직무)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장을 대신한다.

3. <2008.2.27. 2012.1.16. 삭제>

제6조(회의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 진행한다

1.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2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.

3. 가부 동 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위탁의뢰 산업체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

2. 위탁생의 선발 기준

3.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 방법

4.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5. 산업체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6.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
7. 학교와 산업체와의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

8. 기타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9. <2022.03.31. 신설> <2022. 9. 19. 삭제>

제8조(재정) ① 학교의 장은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2024.2.22. 제정>

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2024.2.22. 제정>

부 칙

제1조(규칙과 세칙) 본 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및 세칙 내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8조(재정)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